

「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: 2026년 8월 24일
2. 발 의 자: 김원섭, 양진오 의원(2인)
3. 찬 성 자: 김영태, 김재우, 김종화, 김지식, 김현경, 박윤경, 소진혁, 신용하, 유승현, 이상호, 이정호, 이정희, 이탕모 의원(13인)
4. 회부일자: 2026년 8월 25일
5. 상정일자: 2026년 9월 2일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II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김 원 섭 의원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3조~제5조)
- 다.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라. 자문위원회,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2조, 제26조, 제33조, 제40조

나.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6. 8. 25. ~ 8. 31.) 결과 의견없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관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,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, 제5조에서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구미시 농촌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조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, 일자리 활성화 등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되,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위 법률에 따른 ‘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’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였음.
-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농촌 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, 기존 농촌 개발 사업과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는 한편, 농촌이 삶·일터·쉼터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V. 토론요지: 생략

VI. 소수의견의 요지:

- 축산지구 지정 시 민원 발생과 반발이 예상되며, 주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광범위한 지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주민 협의회를 구성하고,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특화지구를 발굴해야 함

VII. 심사결과: 원안가결